

# 『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 의 자 : 윤종호 의원 외 4명

### 2. 제안이유

-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방범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- 방범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범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가정의 범죄노출을 막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